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
드리고자 합니다.

□ 현행 회의 규칙은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
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
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
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
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
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
지적이 있었습니다.

□ 이에 본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
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개정규칙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